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64호 | 발행인 : 백선희 | 발행일 : 2018년 2월 10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안전한 급·간식 제공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이 우선이다

I. 영유아기 급·간식의 중요성

영유아기의 급간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에 차이가 있음.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식재료 개별 구매로 인한 품질관리 곤란, 급식비 유용, 발달에 맞지 않는 급식 제공 등의 문제가 제기됨.¹⁾
- 국가발전에 있어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푸트라자야 선언문에 명시함.²⁾
 - ▶ 보호, 건강, 영양, 학습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 제공과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 간의 통합적인 정책과 전략, 양질의 프로그램 실행의 필요성을 주장함.
- 영유아기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식습관은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침.
 - ▶ 성장기 양질의 식사는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침.³⁾
 - ▶ 음식에 대한 기호도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음식에 대한 수용 정도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⁴⁾이므로 중요함.
- 영유아기의 영양 섭취량과 섭취 행태는 아동기와의 차별성을 지님.
 - ▶ 어린이집은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급·간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영아는 치아와 근육의 미발달로 유아와 별도로 관리되어야 함.
 - ▶ 유치원의 유아의 경우도 신체적으로 성장기에 있으므로 하루 영양 섭취량을 한 번에 섭취하기보다는 식사와 간식으로 나누어 섭취가 필요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유아들은 하루에 1회 식사와 1회 이상의 간식을 제공받음.
 - ▶ 41,084개소의 어린이집에서 145만 1,215명⁵⁾의 영유아와 8,987개원의 유치원에서 70만 4,138명⁶⁾의 유아들이 급·간식을 제공받음. 특히,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 확대에 예전보다 장시간 머물게 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유치원 급식 운영관리 지침 개발(도남희·최정화·박상신, 2017)」에 기초함.

1) 연합뉴스(2016. 11. 30). 급식재료 3배 뺀 뒤겨 28억 배들린 유치원·어린이집 25곳 적발.

베이비뉴스(2017. 12. 26). '언니급식' 같이 먹는 병설유치원, 해결책 없는가?

2) Asia-Pacific Regional Policy Forum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2016). Putrajaya Declaration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Asia-Pacific.

3) SBS뉴스(2014.10.14). 부실 급식 애들이 덜 크다.

4) 교육부(2012). 유치원 급식 운영관리 지침서. p. 3



- 영유아의 급·간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은 차이가 있어 급·간식 운영의 형평성의 문제를 지님.
 - ▶ 각 부처 관련 법규에 의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 기준과 강조점에 차이가 있으며 급·간식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함.
 - ▶ 그러므로 영아와 유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검토하여 같은 연령대의 통일된 기준 제시와 현장의 실천을 필요로 함.

II. 급·간식 관련 법적 기반과 문제점

영유아를 위한 급식 관련 발달적 특수성을 고려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미흡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은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발달, 위생, 안전 등과 같은 다면적 지원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충족시키지 못함.
 - ▶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원장은 균형 있고 위생적인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그 외 관리 기준은 따로 제시하고 있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외에 영양과 급식 관리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필요함.
 - ▶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원장은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는 급식 운영 규정은 과거 반일제 교육기관으로 유치원이 기능했던 시기의 규정으로 한계를 지님.
 - ▶ 돌봄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유치원의 현재 상황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급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함.

〈표 1〉 급식 운영 관련 법령 비교

구분	법령	급식관리	식단관리	위생관리	시설설비	인력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	○	○	○	○
공통	식품위생법	○		○		○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	○			○
유치원	유아교육법	○			○	○
	학교급식법		○	○	○	○
	학교보건법			○		

주: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운영과 관련된 주요 법령만 비교하였음.

2) 산업안전보건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농수산물에 관한 법령이 관계되나 기타 사항으로 제외함.

자료: 도남희·최정화·박상신(2017). 유치원 급식 운영관리 지침 개발. pp. 13-20.

- 영유아의 급식은 발달적 특수성을 고려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 어린이집은 영아와 유아의 발달적 특수성을 반영한 급식 운영이 될 수 있는 지침이나 매뉴얼 부재로 효율적인 급식 운영의 한계를 지님.

5) 보건복지부(2016). 2016년 보육통계.

6)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교육통계연보.

-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급식 운영을 하고 있으나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 급식 대상과 비교하여 소화능력이나 발달의 영양학적 요구가 다른 대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Ⅲ. 급·간식 관련 제도적 기반과 문제점

효율적인 급·간식 운영을 위해 시설설비와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기준도 확보되지 못함.

- 기관에 머무는 영유아들의 급·간식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반 시설·설비가 중요한 기본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최소기준이 부재함.
 - ▶ 어린이집의 99%는 조리실을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현원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의 조리실이 57.8% 정도임.
 - ▶ 유치원의 경우, 조리실을 갖추고 있는 곳은 98.5%로서 100㎡ 이상의 대규모와 20~49㎡의 소규모의 조리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에서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조리실 규모가 다른 유형의 조리실에 비해 큰 규모임을 볼 때, 이는 유치원 별도의 조리실이기 보다는 초등학교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추측됨.

<표 2> 조리실 유무와 규모

단위: %(개소)

구분	조리실 있음	10~19㎡	20~49㎡	50~99㎡	100㎡ 이상	계(수)
어린이집	99.0	57.8	32.7	3.7	5.8	100.0(600)
국공립	100.0	46.8	45.3	4.3	3.6	100.0(139)
사회법인	98.5	40.0	50.8	4.6	4.6	100.0(65)
법인·단체	97.8	47.8	39.1	4.3	8.7	100.0(46)
민간	100.0	55.7	33.9	3.9	6.5	100.0(230)
가정	96.7	88.3	3.3	1.7	6.7	100.0(120)
유치원	98.5	21.8	32.0	10.8	35.5	100.0(400)
공립단설	93.8	6.3	37.5	12.5	43.8	100.0(16)
공립병설	98.0	4.6	9.2	14.5	71.7	100.0(152)
사립법인	97.8	28.3	43.5	15.2	13.0	100.0(46)
사립사인	99.5	35.5	47.3	6.5	10.8	100.0(186)

자료: 도남희·김진미(2014). 육아지원 기관의 급간식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pp. 95-97의 <표 Ⅲ-1-5-1>-<표 Ⅲ-1-5-4>를 재구성함.

- 기관에서의 급·간식 운영을 위해서는 영양관리와 식단 및 조리를 담당할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나 충분한 인력 배치가 되고 있지 않음.
 - ▶ 조리사는 집단급식소로 등록된 경우는 50명 당 1명을 배치하나 어린이집은 40~80명에 조리사 1명을 의무로 하고 있어 급식대상 증가 시 어린이집 조리사의 업무 과중이 야기됨.
 - ▶ 영양사는 현원 100인 이상의 경우만 의무이고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공동으로 채용하여 5개소가 공유할 수 있으나 여러 개 기관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를 지님.

〈표 3〉 영양사와 조리사 배치

단위: 개소, 명(%)

	기관 수	영양사 수	조리사 수
어린이집	43,770(100.0)	848(3.1)	26,710(96.9)
국공립	2,332(5.3)	105(12.4)	3,014(11.3)
사회법인	1,439(3.3)	105(12.4)	1,928(7.2)
법인·단체	868(2.0)	44(5.2)	971(3.6)
민간	14,751(33.7)	475(56.0)	12,633(47.3)
가정	23,632(54.0)	6(0.7)	7,169(26.8)
직장	619(1.4)	113(13.3)	908(3.4)
유치원	8,562(100.0)	3,024(35.3)	3,937(46.0)
국립	3(0.0)	1(33.3)	1(33.3)
공립단설	192(2.2)	124(64.6)	98(51.0)
공립병설	4,324(50.5)	281(6.5)	283(6.5)
사립	4,043(47.2)	2,618(64.8)	3,555(87.9)

주: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 자료가 모두 있는 2013년 자료를 사용함.

2) 어린이집의 총계에는 부모협동 129개소의 통계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

2) 교육부(2013). 유치원급식실시현황. 교육부 내부자료.

IV. 보다 나은 급·간식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건강한 급·간식 운영을 위해서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법령과 가이드라인 및 인력의 지원이 필수적임.

- 영유아의 특수성을 고려한 급·간식 제공
 - ▶ 치아와 근육이 미발달한 영아를 위한 적절한 급·간식 제공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식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함.
 - ▶ 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영양섭취와 급·간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설유치원도 초등학교와 차별되는 독립적인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지원이 필요함.
- 급간식 관련 법률들 간의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을 조율하여 통합적인 법령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부처 간 상충을 조율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제시하도록 함.
 - ▶ 내용의 중복이 있는 경우는 더 포괄적인 내용이나 법령으로 간결하게 제시하고 지침이나 매뉴얼로 상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함.
- 영아와 유아 대상의 급·간식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도록 영양, 메뉴, 식사와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아이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 기관에 머무는 시간 등을 고려한 급·간식 제공 일정을 마련함.
- 급·간식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지원 강화
 - ▶ 영유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양사와 조리사의 교육이 필요함.
 - ▶ 조리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인력 풀을 제공하도록 함.

도남희 부연구위원 cando@kicce.re.kr